#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1046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4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▢ 제안이유

○ 도시계획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을 기초로 안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·공포(2000. 12. 1)하고 이를 시행하여 온 바, 종전의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과 동 조례가 일부분 상충되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## ▢ 주요골자

○ 종전의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었던 건축물은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함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함 (안 제67조 신설).

## ▢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▢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▢ 관련사업계획 : 해당없음

## 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☐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2002. 3. 26 ~ 4. 4

## ☐ 기타 참고사항 : 별 첨

○ 1, 2단계 지구단위계획(종전의 도시설계지침)

#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 (지구단위계획의 효력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. 다만,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도 시 계 획 과 |
|---|---|---|
| 입안자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| 도시계획과장<br>이 성 연 |
| | 담당·팀장<br>직위·성명 | 도시계획계담당<br>이 경 섭 |
| | 담 당 자<br>성명·전화 | 송 세 종<br>(행정 2374) |

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<신 설> | 제67조 (지구단위계획의 효력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. 다만,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|
| 제67조 (시행규칙) (생 략) | 제68조 (시행규칙) (현행 제67조와 같음) |